

(재)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3호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임) 모집 공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직위** :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임)
- 임용인원** : 1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1회 연임가능)
- 보 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와의 CEO 성과계약에 의함
- 주요직무**
 - 재단을 대표하여 재정과 사무를 통할함
 -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함
- 응모자격**

구분		상임임원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예술 관련기관경영 능력이 있는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력 기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분		상임임원
	민간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실적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인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경력기준은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시 지원 가능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 민간기업,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 등을 포함

※ 관련분야 기준은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뜻함

□ **결격사유**(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전형절차

- 1단계 : 결격사유 조회
- 2단계 : 서류심사 (2/13 ~ 2/16 중 예정)
- 3단계 : 면접심사 (2/19 ~ 2/22 중 예정)
 - 면접전형 시, 각 후보자의 개인별 직무계획 발표(자유형식, 약 10분 내)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후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
- 4단계 : 추천후보자 이사회 의결
- 5단계 : 이사장에게 추천 후보자 명단 제출
- 6단계 : 이사장(인천광역시장)이 최종 선임
 - ※ 단, 선임후에라도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됨

□ 세부 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및 예술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경영능력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그에 따라 재단을 경영할 수 있는 유연성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예술기관에 대한 특수성과 복합성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 경영, 정책, 예술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력, 경험 정도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인으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대규모 조직 또는 복합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
조직친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공감능력 ·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 수 있는 조화 및 협상능력
윤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임원으로서의 공사를 구분하는 윤리관 · 공공과 민간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 결정

□ 지원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1월 18일(목) ~ 2월 1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이메일 접수 : jyoona@ifac.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대표이사응모원서-홍길동” 으로 표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 및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② 방문접수

- 접수처 : (22313)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항동 5가 13)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
- 접수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접수완료 후 확인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건에 한 해 유효

③ 등기우편 접수

- 보내실 곳 : (22313)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항동 5가 13)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

※겉봉투에 “대표이사 공모 응모서류 재중” 표기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응모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	자기소개서	A4 용지 기준, 글자크기 11, 자간 100, 줄간격 160, 3매 내
3	직무수행계획서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A4 용지 기준, 글자크기 11, 자간 100, 줄간격 160, 3매 내
4	직무계획 발표자료(약 10분 내)	형식 자유, 면접진행 시, 각 후보자의 개인별 직무계획 발표 시 진행자료

No.	제출서류	비고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	본인확인 및 결격사유조회시 필요
6	결격사유확인서	
7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8	최종학력증명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경력증명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 1~3, 5~6의 서류는 공지사항 내 첨부된 첨부파일(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국어로 된 제증명서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선임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관련 서류들은 관련법에 의거 폐기됩니다.
-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번호로 공고 예정입니다.
- 최종 선임되신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임되지 않은 분은 별도 연락드리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천문화재단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문화재단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대표이사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재산등록 및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입니다.
-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032-455-7115)으로 문의 하시거나,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재)인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